

제334회 정례회
2014.09.30.(화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교육위원회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4.09.30.(화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일자: 2014년 09월 03일

다. 회부일자: 2014년 09월 11일

라. 상정일자: 2014년 09월 16일

(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행정관리국장 박종철)

가. 제안이유

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장의 일반직 4급 상당 교육전문직원
직위 승인통보¹⁾에 따른 교육전문직원 직급별 정원 조정과 충청
북도의회 사무처를 폐지하고 단위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.

1)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-3517(2014.06.16.)

나. 주요내용

- 1)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교육전문직원 직급별 조정(충청북도교육청 제주교육원장)
 -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총정원 $\Delta 1 \rightarrow$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본청(직속기관 포함) 정원 +1
- 2)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삭제 및 단위기관별 정원 조정(개정안 제2조, 별표3)
 -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총정원 $\Delta 7 \rightarrow$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+7
 -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일반직 4급 $\Delta 1 \rightarrow$ 본청(직속기관 포함) 일반직 4급 +1

3. 검토보고 요지

(검토보고: 수석전문위원 정대회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제주교육원장의 직급이 교육부로부터 일반직 4급 상당으로 승인 통보됨에 따라 교육전문직원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총정원에서 1명을 감원하고,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정원을 1명 증원한 것이며,
-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에 배정된 정원 7명을 삭제하여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에 합산한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5. 토론요지: “생략”
6. 심사결과: “원안가결”
7. 소수의견요지: “없음”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9. 첨부서류: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, 제2호 중 “2,907명”을 “2,914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	공립 각급학교
총계	3,145	-		
정무직 계	1	1		
교육감	1	1		
일반직 계	2,901	-		
3급	1	1		
3·4급	4	4		
4급	19	18	1	
5급 이하 소계	2,864	-		
전문경력관 소계	13	-		
연구직 계	12	-		
연구사 소계	12	-		
교육전문직원 계	231	-	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원	33	22	11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원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198	-		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,145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: 7명</p> <p>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: <u>2,907명</u>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</p> <p>3. (생략)</p> <p>[별표 3]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">기관별 직급별</th> <th>총계</th> <th>도의회 사무처</th> <th>본청 (직속기관 포함)</th> <th>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</th> <th>공립 각급학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총계</td><td>3,145</td><td>-</td><td>-</td><td>-</td><td>-</td></tr> <tr><td>정무직 계</td><td>1</td><td></td><td>1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교육감</td><td>1</td><td></td><td>1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일반직 계</td><td>2,901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3급</td><td>1</td><td></td><td>1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3·4급</td><td>4</td><td></td><td>4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4급</td><td>19</td><td><u>1</u></td><td>17</td><td>1</td><td></td></tr> <tr><td>5급이하 소계</td><td>2,864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전문경력관 계</td><td>13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연구직 계</td><td>12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연구사 소계</td><td>12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교육전문직원 계</td><td>231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</td><td><u>32</u></td><td></td><td><u>21</u></td><td>11</td><td></td></tr> <tr><td>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</td><td><u>199</u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계	도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	공립 각급학교	총계	3,145	-	-	-	-	정무직 계	1		1			교육감	1		1			일반직 계	2,901					3급	1		1			3·4급	4		4			4급	19	<u>1</u>	17	1		5급이하 소계	2,864					전문경력관 계	13					연구직 계	12					연구사 소계	12					교육전문직원 계	231					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<u>32</u>		<u>21</u>	11		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<u>199</u>				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2. ----- ----- ----- : <u>2,914명</u> 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 3]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">기관별 직급별</th> <th>총계</th> <th>본청 (직속기관 포함)</th> <th>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</th> <th>공립 각급학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총계</td><td>3,145</td><td>-</td><td>-</td><td>-</td></tr> <tr><td>정무직 계</td><td>1</td><td>1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교육감</td><td>1</td><td>1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일반직 계</td><td>2,901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3급</td><td>1</td><td>1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3·4급</td><td>4</td><td>4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4급</td><td>19</td><td>18</td><td>1</td><td></td></tr> <tr><td>5급 이하 소계</td><td>2,864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전문경력관 계</td><td>13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연구직 계</td><td>12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연구사 소계</td><td>12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교육전문직원 계</td><td>231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</td><td>33</td><td>22</td><td>11</td><td></td></tr> <tr><td>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</td><td>198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	공립 각급학교	총계	3,145	-	-	-	정무직 계	1	1			교육감	1	1			일반직 계	2,901				3급	1	1			3·4급	4	4			4급	19	18	1		5급 이하 소계	2,864				전문경력관 계	13				연구직 계	12				연구사 소계	12				교육전문직원 계	231				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33	22	11		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198			
기관별 직급별	총계	도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	공립 각급학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계	3,145	-	-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1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감	1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2,90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·4급	4	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19	<u>1</u>	17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이하 소계	2,86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 계	1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직 계	1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사 소계	1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전문직원 계	23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<u>32</u>		<u>21</u>	1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<u>199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	공립 각급학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계	3,145	-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감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2,90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·4급	4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19	18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이하 소계	2,86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 계	1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직 계	1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사 소계	1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전문직원 계	23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33	22	1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19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관계 법령 발췌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[시행 2014.6.11.] [대통령령 제25375호, 2014.6.11., 타법개정]

제15조(정원의 관리)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그 조사·확인 결과를 기관별·기구별·종류별·직렬별·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·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
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
2.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3. 업무의 성질상 범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
제20조(정원의 규정) ① 시·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 정원
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
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

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·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1. 5급 이하 직급별 정원
2.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
3. 교육전문직원 중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정원

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

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<개정 2013.5.8.>

④ 직렬별 정원(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0.2.26.] [법률 제10046호, 2010.2.26., 일부개정]

제17조(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) ① 교육위원회 및 시·도의회는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 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.

[법률 제10046호(2010.2.26)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]